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든든한TDF204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사전지정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, 투자전략 보완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 등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9월 06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목적 및 투자 전략	투자전략 보완	- <신설>	-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.
투자비용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	-	-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로 인한 변경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클래스 추가	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- <신설>	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 · 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  -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(O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 · 설립된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.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투자목적 및 투자 전략	투자전략 보완	-	-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

			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여 운용합니다.
투자비용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	-	- <u>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로 인한 변경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 - <신설>	- 퇴직연금(P2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(IRP)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단,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 · 설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</u> -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(O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 · 설립된 경우에 가입가능합니다.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<신설>	- <u>Class C-O 추가</u>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<신설>	- <u>Class C-O 추가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2.09.06: <u>사전지정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, 투자전략 보완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 등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가. (생략) 나. 종류형 구조 - C-P2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- C-P2e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종류형 구조 - C-P2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 - C-P2e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

		<p>- S-P2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- J-P2e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- &lt;신설&gt;</p>	<p>- S-P2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검정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J-P2e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Class C-O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투자전략 보완	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p>(1) 주요 투자전략</p> <p>투자전략</p> <p>※ &lt;신설&gt;</p>	<p>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p>(1) 주요 투자전략</p> <p>투자전략</p> <p>※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합니다.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<p>가. 매입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- C-P2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- C-P2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</p>

		<p>를 개설한 자</p> <p>- C-P2e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</p> <p>- S-P2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- J-P2e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</p> <p>- &lt;신설&gt;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개설한 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C-P2e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S-P2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가입자,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J-P2e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)</p> <p>- C-O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)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를 통하여 가입한 자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,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	<신설> -	- C-O 추가 -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보수 인하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	가. 이익배분 (1)~(4) (생략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, S-P2, J-P2e 가입자	가. 이익배분 (1)~(4) (현행과 동일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, S-P2, J-P2e, C-O 가입자

		(이하 생략)	(이하 현행과 동일)
--	--	---------	-------------

<끝>.